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세제

심 영 택
행정안전부 서기관

영국의 지방세제

Ⅰ. 전체 조세체계(국세+지방세)

2005년 기준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 및 기타	계
국 세	소 득 세 법 인 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 세 연료소비세 기 타	자본이득세 상 속 세 인 지 세 기 타	
	51%	38%	7%	96%
지방세			카운슬세	
			4%	4%
총 계	51%	38%	11%	100%

영국은 국가 체제상으로는 단일형 국가이지만 많은 경우 네 개의 지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독자적인 정책이 실시되는 등 연방형 국가의 면모를 갖고 있음.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잉글랜드를 제외한 지역은 단층구조의 지방행정체제를 갖는 반면 잉글랜드는 2계층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에 따라 단층 또는 3계층의 지방행정체계를 가짐.

영국은 1990년에 지방세제 개편('비거주레이트세'의 국세전환 등)이 이루어진 후부터 지방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는 카운슬세(Council Tax) 1세목으로 축소됨. 1990년대 이후 전체 세수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형태임.

〈 국세와 지방세수입의 연도별 비중추이 〉

	1980	1990	2001/02	2005/06
국 세	87.7%	91.6%	95.8%	96%
지방세	12.3%	8.4%	4.2%	4%
합 계	100%	100%	100%	100%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출비율, 2004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출비율	75.9%	24.1%

지방재정은 교육, 주택, 대인사회서비스, 환경, 경찰, 소방서비스 부문 등에 지출되는데 2005/06결산기준으로 교육(38%), 대인사회서비스(18%), 주택(14%), 경찰(11%)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Ⅱ. 지방세의 내용

영국은 현재 비록 1개 세목의 지방세만을 유지하고 있으나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방정부개혁 프로그램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특히 효율성과 책임성 원리가 가장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영국정부는 "최고가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최고가치 회계제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음.

2002년에는 최고가치 성과평가제도를 발전시킨 "종합성과측정제도(CPA;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가 도입되었고 그 측정결과를 토대로 행·재정상의 자율과 혜택을 확대하거나 각종 규제와 점검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성과평가가 부진한 지방정부에 대하여는 성과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각종 재제조치 및 불이익을 줌.

2005년부터는 모든 지방정부에 대해 효율성 달성 정보를 수록하는 "효율성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성과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일부 지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카운슬세(Council tax)

현재 영국의 유일한 지방세인 카운슬세 도입 전에 주거레이트 제도(주택의 자산가치를 기초로 부과)가 있었고, 그 이후 주민부담금 제도(인두세방식, 18세 이상의 성인들에 대해 빈부를 불문하고 단일세율로 과세)를 거친 후 이 두 제도의 절충안으로서 1993년에 카운슬세가 도입.

구분	내 용
납세의무자	주택 1구당 기준으로 과세. 주택이라 함은 일반주택, 방갈로, 아파트, 연립아파트, 이동주택, 선상주택 등으로서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음 ①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resident freeholder) ② 주택의 임차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resident leaseholder) ③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임차인(tenant) ④ 허가를 받아 거주하는 자((resident licensee) ⑤ 거주자((resident) ⑥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과세방식	매년 3, 4월에 고지되고, 고지서에는 납부세액과 산출근거를 담고 있음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주택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잠정세액을 산출한 후, 다음 산출된 세액을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성인 수와 연계 시켜 최종적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두 단계 과정을 거침 □ 1단계 : 주택가격의 평가 – 해당 주택의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잠정세액을 산출하는 단계로서 영국정부는 카운슬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과표산정에 있어서 가격대 방식을 채택하여 자산의 평가가치가 가장 낮은 A등급부터 가장 높은 H등급의 8등급으로 모든 주거용 자산을 구분함 – 이런 가격대 방식의 장점은 각 가격대의 구간 폭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자산가격을 빈번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없음

구분	내 용
	□ 2단계 : 성인 수를 고려 –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액의 100%가 과세되고, 1인인 경우에는 기본세액의 75%과세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카운슬세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웨일즈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25%까지 부담하도록 함
세율	지자체는 세출과 연계하여 과표단계별로 부과할 세액 결정. – 매년 예산 결정과정에서 세출예산과 국가의 보조금을 포함하여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모두 결정한 후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만큼의 카운슬세를 징수함
비과세 · 감면	두 번째 보유 주택의 경우 카운슬세를 10%~50% 범위에서 할인 장기미사용 재산(공가 · 공한지)에 대한 할인정책의 철폐 · 축소

카운슬세의 문제점은 조세의 역진성 문제인데 이는 카운슬세가 8개의 구간대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평가액이 최상위 구간대에 속하게 되면 동일하게 과세되어 상대적으로 고가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Council Tax의 세율구조 〉

구 간	자산가치구간(￡1000)			Tax Bills(세율)
	England	Wales	Scotland	
A	40 이하	30 이하	27 이하	6/9 (67%)
B	40 – 52	30 – 39	27 – 35	7/9 (78%)
C	52 – 68	39 – 51	35 – 45	8/9 (89%)
D	68 – 88	51 – 66	45 – 58	1 (100%)
E	88 – 120	66 – 90	58 – 80	11/9 (122%)
F	120 – 160	90 – 120	80 – 106	13/9 (144%)
G	160 – 320	120 – 240	106 – 212	15/9 (167%)
H	320 이상	240 이상	212 이상	2 (200%)

자료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3

영국에서는 지역차원에서 새로운 재정지출수요가 예상될 경우, 지방정부는 그 것을 지방세의 인상을 통해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채의 발행을 통해서 충당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함.

지방세의 세목 수가 1개뿐이고 재정수입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하에서 지방재정의 지출수요가 증가할 때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다양한 세원과 납세자에게 분담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정부가 카운슬세의 세율 인상을 하고자 한다면, 적은 지방재정 수요의 증가를 충당하는데도 지방세부담을 3~4배씩 증가시켜야 하는 소위 "기어효과"를 겪어야만 하므로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활동 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만약 늘어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주민의 재정부담은 증가함. 결국 재정지출과 지방세의 연계성은 신규 재정지출사업을 주민들이 원할 때 지역주민 자신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지는 재정책임성을 촉구하는 역할을 함.

〈 지방재정의 세입구성비, 2006/07기준 〉

구 분	중앙정부보조금[1)]	비거주레이트세[2)]	카운슬세	합 계
비 율	56%	20%	24%	100%

(주) 1)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보조금과 사용용도가 정해진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국은 일반보조금의 비중이 특정보조금비중보다 훨씬 높음. 그러나 2006/07에 일반보조금의 비중을 크게 감소시키고 특정보조금의 비중을 전체보조금의 50%가 넘도록 조정한 시기도 있으나 자금의 사용용도와 혜택이 중앙정부의 선호와 조건과 결부되는 특정보조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정부가 선호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현상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2008년에 다시 일반보조금의 비중을 늘이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었음.

2) '비거주레이트세'는 1990년대 이전까지 지방세였던 세목을 국세로 전환시킨 것으로서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에 재 배분해 주는 양여세적 성격으로 일반보조금에 속함. 부과 대상은 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건물·토지)을 비롯하여 공공건물, 파이프라인, 광고물 등이고, 농업용 토지와 부속건물, 교회 등은 비과세 대상임. '기업레이트' 라고도 하며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이 특정 시점에서 공개시장에 임대를 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연간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함.

〈 한국과 영국의 지방세제도 비교 〉

	한 국	영 국
세 목 수	○ 16개	○ 1개
조세특성	○ 재산과세 중심에 소비과세, 소득과세 미미	○ 기본적으로 재산과세이나 소득세, 인두세 특성보유
과 세 권	○ 세율, 과표, 조세정책 등에 대한 자치단체 권한 미미	○ 지방정부가 과표, 세율 등에 대한 과세권 보유 ○ 간접적으로 중앙정부 통제 작동
과표평가	○ 매년 공시지가 토대의 과표평가 ○ 표준지 평가	○ 법적 요건과 달리 통상 10년 내외의 장기간에 걸쳐 재산재평가 실시 ○ 전국적 전수평가
기 능	○ 자체수입 확충 ○ 조세가격기능 미미	○ 자체수입 조달기능 ○ 조세가격기능, 재정책임성 확보기능
기 타	○ 재정이전제도 연계장치 미미 ○ 모든 자치단체 징수권한 보유 ○ 기어효과 없음	○ 재정이전제도 연계장치 내장 ○ 지정된 자치단체(billing authorities,)만 카운슬세 징수권한 보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자치단체에 지방세의 징수를 요구하거나(이를 “precepting” 이라 함) 다른 간접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원을 조달함 ○ 기어효과 존재

프랑스의 지방세제

Ⅰ. 전체 조세체계(국세+지방세)

우리나라와 같이 국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세입이 전체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는 등록세와 재산세가 지방세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01년 기준, 단위 : 10억 유로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 등	계
국 세	소득세(53.45) 법인세(49.24) 급여세(8.01)	부가가치세(136.49) 관세(25.06) 주세(1.75)	기타(14.26)	
	31%(110.7)	46%(163.3)	4%(14.26)	81% (288.26)
지방세		전기소비세 등(미미)	등록세(10.48) 4대 지방직접세(48.6) (거주세, 기건축토지세, 미건축토지세, 사업세) 기타(6.58)	
			19%(65.66)	19%(65.66)
총 계	31%(110.7)	46%(163.3)	23%(79.92)	100%(353.92)

프랑스는 국세위주의 조세체계가 확립되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약 80 : 20으로 나타남.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조세일반총국(재정경제부산하)에서 담당하고 국가는 징수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방세 징수금액의 약 4%를 비용으로 사전 징취하며, 과세기초의 개정작업을 위해 0.4%을 별도로 징취함. 지방세 부과도 국가가 정한 틀 속에서 밖에 행사할 수 없음. 이와 같이 운영하는 이유로는 행정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이외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정책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지출 비중(2004년 기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출비율	68.8%	31.2%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으로는 지방세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2003년 예산 기준으로 47%를 차지하고 그 외에 국가 보조금, 교부금, 지방채, 수익사업을 통한 사용료,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됨.

프랑스에서 지방자치의 개혁이후 지방예산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동등보상의 원칙에 따른 국세의 이전이 보조금의 신설과 함께 이루어져 왔기 때문임. 1970년에는 지방세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1981년에는 37% 그리고 1990년대에 50%이상으로 높아졌음. 국세의 이전으로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관련세 및 등록관련세이고 전체 지방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51%임.

프랑스의 행정은 국가가 중심이지만 지방행정은 레시옹(26개), 데파르트망(100개), 코뮌(36,783개)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2008년 기준).

Ⅱ. 지방세의 체계

프랑스의 지방세 제도는 다음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① 4대 지방직접세인 건축물 토지세, 미건축물 토지세, 거주세, 사업세에 대하여 상위, 중간,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② 지방세의 세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인데, 자치단체가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 신설하고 폐지할 수 있는 임시세가 발달되어 있음

③ 지방세 중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인데, 사업세수입의 격차가 자치단체간 재정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④ 자치단체가 법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목에 대한 세율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재정자치의 확대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1. 지방세 세목 구성

(2001년 결산기준, 단위 : 10억 유로)

구분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 및 기타	합계
지방세계	(없음)	(미미함)	65.66	65.66
직접세			거주세, 사업세, 기건축토지세, 미건축토지세, 등록세 기타(가정오물수거세, 전신주세, 설비세)	

(2001년 결산기준, 단위 : 10억 유로)

구분	소득 과세	소비 과세	자산 과세 및 기타	합계
간접세 등		전기소비세 등	이전세, 도시개발세, 지방설비세, 음료업허가세, 극장세, 사냥허가증세, 도박세, 천연수사용세, 광고세, 관광거주세 등	

국세는 프랑스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재산세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은 국세에 해당됨. 반면 지방세의 경우 대부분 등록세, 재산세 관련된 세목이 해당됨

지방세 부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최하위 행정단위로서 우리나라의 시·읍·면에 해당하는 코뮌(기초자치단체)과 그 바로 위 행정 단위인 데파르트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레시옹(광역자치단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현황 및 예산은 다음과 같음.

〈지자체 수준별 업무구분〉

구분	코뮌	데파르트망	레시옹
업무내용	– 위생 – 공공주거배분 – 음용수 배분 – 가정 쓰레기 제거 – 공립학교관리 (12살까지 아동) – 도시계획 등	– 공공부조(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 사회적 통합을 위한 최소수입(RMI)의 배분 – 중학교 관리 (12·15세 학생) – 의학-사회적 보건기관 설립 – 제2차 국도의 행정도로관리 등	– 경제개발(기업에 대한 지원 등…) – 직업교육 및 견습 (지역계획, 지역 프로그램…) – 고등학교 관리 (15·18/19세 학생) 등

①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지출 비중(2001년 기준)

	코뮌	데파르트망	레시옹
비 율	59.1%	30.6%	10.3%

② 지방세 부과 기관별 지방세 세입총괄 현황(2001년 기준, 단위: 유로)

조세분류	코뮌(*)	데파르트망	레시옹	합계
직접세	387억	136억	31억	554억(86%)
간접세	26억	42억	14억	84억(13%)

조세분류	코뮌(*)	데파르트망	레시옹	합계
도시세(**)	4억	2억	1억	6억(1%)
합계	417억(65%)	179억(28%)	45억(7%)	10.3%

주) * '코뮌' 은 가장 높은 지방세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지방세와 관련하여 레시옹이나 데파르트망에 비해 더 많은 재정분권을 향유한다고 볼 수 있음.
지방세 부과는 국가의 제약하에서 지방의회가 결정하면 중앙정부가 합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4대 지방세와 특별세의 창설을 각 꼬뮌의 지방의회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거세의 기초공제도 일정 범위 내에서 꼬뮌이 독자로 설정할 수 있고 법정 임의세에 대해서도 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꼬뮌의 과세자주권은 상당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코뮌의 법정의무세는 직접세로 4대 지방세, 간접세로는 흥업세, 음료판매허가세, 수렵허가인지세 등이 있는데 세율은 전년도 데파르트망 내에서 확인된 코뮌 평균 세율의 2.5배 이상은 안되며, 전국평균의 2.5배를 초과할 수도 없음.
그 외 법정임의세로 지방정비세, 주차장비건설세, 건축기준초과세, 전기세, 대재세, 광고게시세, 고정광고세, 카지노수익세, 볼링장세, 미네럴워터세, 리프트세 등이 있음.
** 지방시설세, 일드프랑스 레시옹의 지방시설부가세, 건폐율초과부담금, 주차시설분담금, 일드프랑스 지역 사무실 개설 사용료

③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별 세목별 세입구성 현황 (2001년 기준)

	코뮌	데파르트망	레시옹
4대 직접세(*)	75.8%	75.8%	67.3%
오물수거세	7.3%		
전기세	2.0%	2.3%	
토지공시및등기세		18.6%	
자동차납세필증		1.8%	
자동차등록세			30.6%
기타	14.9%	1.5%	2.2%
합계	59.1%	30.6%	10.3%

주) 위 표에서 지방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4대 직접세"의 세수입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음(단위:10억 유로)

4대 직접세	거주세	기건축물토지세	미건축물토지세	사업세	합계
비율	23%(11)	29%(14)	2%(1)	46%(22)	100(48)

2. 지방세 세목별 내용

1) 기건축물 토지세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과세주체</td><td>○ 코뮌, 데파르트망, 레시옹</td></tr>
<tr><td>납세의무자</td><td>○ 매년 1월 1일 현재 건물 및 건물용에 제공되는 토지 소유자</td></tr>
<tr><td>과세객체</td><td>○ 시설물(토지위에 세워진 모든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td></tr>
<tr><td>과세방식</td><td>○ 해당 부동산이 있는 코뮌에서 일단 과세하지만 그 위의 상급단체격인 데파르트망과 레시옹에서 각각 세율을 결정하여 추가 과세함.
○ 매년 1월1일을 과세기준으로 하며 납기는 9월15일까지</td></tr>
<tr><td>과세표준</td><td>○ 토지대장상의 임대가격 평가액에서 자산의 유지, 수리,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50%을 기초 공제함

〈임대가격 평가〉
– 임대가치의 개념: 정상적으로 임대되었을 때 일년간의 수입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
– 임대가치 평가 :
・임대가치의 평가는 지방의원과 납세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의 협조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과에 의해 이루어짐
・건물의 완성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후 90일 이내에 소유권자의 신고에 의해 임대가치가 새롭게 결정됨
– 평가기준 :
・기건축토지세는 1970년 시장가격에 바탕을 두고, 미건축토지세는 1960년 시장가격에 근거를 둠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현실화계수 및 재평가계수에 의해 임대가치가 수정됨
・1990년 7월 30일의 지방직접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건축물 평가의 일반 수정에 관한 법이 전반적인 규정을 마련</td></tr>
<tr><td>세 율</td><td>○ 3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세와 미건축토지세와 같이 세율의 법정상한선과 세율 간의 관계규칙을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 기건축물 토지세의 2001년 전국평균세율은 27.44%
<table>
<tr><th>코뮌</th><th>데파르트망</th><th>레시옹</th><th>합계</th></tr>
<tr><td>17.28%</td><td>8.19%</td><td>1.97%</td><td>27.44%</td></tr>
</table></td></tr>
<tr><td>면제와
감 세</td><td>○ 영구면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사회부조기관과 공업 · 상업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공공조직에 속하는 시설물이 들어선 토지로서 공공서비스와 일반인의 이익에 사용되는 경우
– 농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 및 농업활동 관련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물이 들어선 토지도 면제의 대상임
– 종교활동에 할애된 건물
– 사료, 탈수용 활동에 할애된 건축물
– 국가간 협약에 의해 외국국가에 속하면서 건물이 외교적 용도로 쓰이는 경우와 상이군인협회에 속하는 건물도 면세
○ 임시면세
– 주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에 관련된 것으로 그 대상물의 내용에 따라서 2년부터 25년간의 기간의 기한으로 면제</td></tr>
</table>

2) 미건축물 토지세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과세주체</td><td>○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코뮌</td></tr>
<tr><td>납세의무자</td><td>○ 매년 1월 1일 현재 건물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은 토지(농지, 공지등)소유자</td></tr>
<tr><td>과세객체</td><td>○ 건축물이 없는 부동산</td></tr>
<tr><td>과세표준</td><td>○ 토지대장상 임대가격 평가액에서 토지가 임대되지 않는 경우의 리스크로서 일률적으로 20%을 공제함</td></tr>
<tr><td>세 율</td><td>○ 3단계의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시옹)가 세율의 법정상한선과 세율간의 관계규칙을 준수하면서 각각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해 도시계획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500%까지 인상 가능함
– 미건축물 토지세의 2001년 전국평균세율은 65.73%
<table>
<tr><th>코뮌</th><th>데파르트망</th><th>레시옹</th><th>합계</th></tr>
<tr><td>41.29%</td><td>19.59%</td><td>4.85%</td><td>65.73%</td></tr>
</table>
</td></tr>
<tr><td>면제와
감 세</td><td>○ 면 세
– 국가나 공적기관이 소유한 토지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협회 (상이군인협회, 직업장애인협회 등) 소속의 토지 등
○ 감세(토지 소유자의 감세신청에 의해서 감세조치함)
– 자연재해에 의한 토지유실 및 농작물 소실
–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피해 등</td></tr>
</table>

3) 거주세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과세주체</td><td>○ 코뮌, 데파르트망(2001년부터 레지옹분은 폐지)</td></tr>
<tr><td>납세의무자</td><td>○ 매년 1월 1일 현재 거주용 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자(그 주택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는 묻지 않음). 만일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부동산세와 거주세를 동시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자의 경우에는 주민세의 납세의무만 있음</td></tr>
<tr><td>과세객체</td><td>○ 주거용 주택. 여기에는 개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 주거주지, 별장 등이 포함되며 차고, 주차장, 정원, 놀이터 등도 포함</td></tr>
<tr><td>과세표준</td><td>○ 토지대장상의 당해 주택의 임대가격평가액. 다만, 일정 범위내에서 정한 기초공제, 부양공제 등의 액을 공제</td></tr>
<tr><td>세율</td><td>○ 지방자치단체가 기건축물토지세와 미건축토지세와 같이 세율의 법정한선과 세율 간의 관계규칙을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 기건축물 토지세의 2001년 전국평균세율은 19.45%
<table>
<tr><th>코뮌</th><th>데파르트망</th><th>레시옹</th><th>합계</th></tr>
<tr><td>13.56%</td><td>5.89%</td><td>-</td><td>19.45%</td></tr>
</table>
</td></tr>
</table>

4) 사업세

구 분	내 용
과세주체	○ 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
납세의무자	○ 사업이나 영업활동을 하는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 및 법인
과세객체	○ 유형고정자산, 총매출액(총급여액에 과세하던 부분은 기업의 비용압박을 줄이고 기업의 노동수요를 증대하고자 과세 대상에서 삭제함)
과세표준	○ 사업용으로 납세의무자에 의해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토지, 건물, 설비, 동산 등)의 임대가격 평가액, 총매출액. 단, 모든 과세대상에 대하여 16% 기초공제함
세율	○ 3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의 법정상한선과 세율간의 관계규칙을 준수하면서 각각 결정할 수 있으나, 타 지방세에 비하여 제약조건이 많음 – 사업세의 2001년 전국평균세율은 23.60% 코뮌 14.85% / 데파르트망 6.78% / 레시옹 1.97% / 합계 23.60%
면세와 감세	○ 영구면세 – 공적단체의 활동이나 문화, 교육, 보건, 사회, 스포츠 또는 관광활동과 이와 관련되는 제반활동 – 수공업 및 농업활동 – 사회사업 활동 – 지방자치단체 활동 – 외설을 제외한 공연사업 및 영상사업에 대하여 면세 등 ○ 임시면세 – 소도시 소재 의료 · 의약관련 사업체 – 안전시설물에 대한 면세 – 수질 · 대기오염 경감 시설물에 대한 면세 등

5)기타 직접세

(1) 일드프랑스 레시옹 시설특별세

구 분	내 용
납세대상	○ 레시옹 내에서 토지소유세 및 사업세가 부과되는 납세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과세기준	○ 주세금에 병과되어 징수되며 주세금과 같은 기준에 의해 계산되어 지는데 과세근거는 지리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적응계수가 부여될 수도 있으며, 적응계수는 레시옹 의회에서 결정함
적용세율	○ 세율은 토지소유세 및 사업세에 병과되며, 레시옹 의회는 심의에 의해 그 세율을 규정 내에서 결정함

(2) 공공시설을 위한 시설특별세

구 분	내 용
납세대상	○ 도시법에 따른 공공토지시설등에 대하여 직접세에 병과되어 부과
과세기준	○ 당 조세가 병과되는 주조세와 같은 기준으로 설정
적용세율	○ 조세총액은 재정법에 의해 각 시설에 지정된 한도 내에서 시설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매년 고시

(3) 오물수거세

구 분	내 용
납세대상	○ 기건축 토지세에 병과되는 조세로서 부과는 임의적으로 가정폐기물처리를 위한 특별재정의 일환으로서 공장, 공공업무용을 제외한 토지세 대상의 모든 부동산 및 부속건물에 부과
과세기준	○ 기건축토지세와 같은 과세표준을 사용함
적용세율	○ 시의회는 오물수거세의 징수지역 및 구역에 따른 세율을 결정함
면세 및 감면	○ 당연면세 – 비영리적 목적의 공공서비스에 할애된 공익건물이 기건축토지세 면세를 받을 경우 및 동 구역 내의 모든 공장 및 부속토지 – 오물수거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있는 건물 ○ 임의면세 – 매년 10월 15일 이전에 시의회가 다음 대상물에 대하여 익년 도 면세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상 · 공업 목적의 건물 나) 폐기물소각시설을 갖춘 건물 다) 특별사용료 징수자

(4) 청소세

구 분	내 용
납세대상	○ 납세대상은 공도에 인접한 건물의 1월1일 현재 소유자며 임차인에게 전가 가능함. 임의적 조세이며 도로청소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에서 부과함
과세기준	○ 납세대상물에 인접한 공도의 면적에 따라 과세의 기준을 정하며 미건축지에도 과세함
적용세율	○ 총세수입은 통행에 할애된 공도부분의 청소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6) 간접세

(1) 전기세

구 분	내 용
납세대상	○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부과. 임의적 조세로서 코뮌에 의해 징수
과세기준	○ 전기사용고지량의 일정비율
적용세율	○ 코뮌수준에서는 8%, 데파르트망은 4% 요율의 상한이 설정 -– 면세대상: 모든 종류의 차량, 공도의 가로등은 면세
징수	○ 프랑스전기회사가 징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이체시킴

(2) 자동차납세필증요금

구 분	내 용
납세대상	○ 데파르트망이 징수하는 의무적 조세로서 과세기간은 12월1일부터 익년11월 30일까지
과세요율	○ 차량연한 및 용량에 따라 적용 요율을 확정
징수	○ 자동차등록세 징구지에서 필증을 구매하여 지불함

(3) 구역광고세

구 분	내 용
납세대상	○ 코뮌이 부과하는 임의적 조세로서 공공의 통행에 노출된 광고설치물에 부과.
면세	○ 긴급한 공공서비스 관련 광고물 ○ 모든 사업적 성격을 제외한 공익광고 ○ 지역기업에 의한 생산물의 제작, 판매에 관련된 광고 ○ 보조적인 광고를 위해 사무소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